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안교육기관 오하비리더십학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가치(하나님,자신,함께함의 가치)를 아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 오하비리더십학교'라고 칭한다.

제3조(위치) 이 대안교육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꿈의교회(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설 기관으로 둔다.

제4조(건학이념) 전인적 변화와 하나님의 뜻 분별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세상을 섬기는리더를 길러낸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예비 초등과정 1년, 초등과정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본교는 7년 통합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7세를 예비초등과정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을 초등과정으로 한다. 학년의 유예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2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 3월 6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분기별 학교장 재량휴가

② 제8조 제 1항 '3','4','5'의 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8조 제 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수) 학급 수는 학년당 1학급, 전 학급을 7학급으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한 학급당 10명씩 7세 반 및 6학년 총 70명으로 한다. 필요시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다. 단, 학교 건물의 확충 등 시설이 갖추어지면 인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교과·수업 일수 및 평가와 과정 수료 인정

제11조(교육과정)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맞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 목적에 맞게 편성한다.
- ② 본교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와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③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과·수업일수)

- ① 본교의 교육이념에 맞도록 교과 및 특별활동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이수 단위를 배정한다.
- ② 교과서는 검정·인정 교과용 도서 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과서를 별도로 선택 및 제작 활용할 수 있다.
- ③ 수업일수는 매 학년 150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평가) 한 학기 모든 수업의 과정은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며, 결과는 생활기록부를 통해 가정에 보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한다.

제14조(수료)

- ① 각 학년의 과정수료를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 수료·졸업 및 그 절차

제15조(입학생 선발)

- ① 교사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입학상담 및 면접을 통해 학교의 설립이념과 학부모 및 학생 의무 사항에 동의한 자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이단 교회 및 단체에 소속되거나 훈련 받는 등 이단과 관련된 가정은 합격이후에도 퇴교조치 될 수 있다.

제16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7세, 초등 1-5학년
- ②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 ③ 해당 학년의 연령자로 해당 학년의 학력이 인정된 학생
- ④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없는 학생

제17조(입학시기)

- ① 입학 확정 시기는 매 학기 개학 전 14일 이내로 한다.
- ② 입학일은 입학 확정이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로 정한다.

제18조(입학방법)

-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 학생과 교사의 입학 면접을 실시한다.
- ③ 학교의 합격 통보 후 등록 마감일 이내에 교육비 납입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합격을 인정한다.
- ④ 절차에 따라 입학이 확정된 학생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전임교의 생활기록부 등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2주 동안의 학교생활을 하며 영성상태, 공동체 생활역량, 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교사회의 결정에 따라 전,편입여부를 정한다. 이 때 수업료는 월 학비에서 일할 계산되어 책정된다.

제20조(진급유예) 질병 및 개인사정으로 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예처리 된다. 유예는 2년 이내로 한다.

제21조(휴학, 복학)

- ①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휴학계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에 출원하여야 하며 휴학생을 학급의 정원으로 인정하여 둔다.
- ② 휴학은 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1년 이하로 한다.
- ③ 휴학생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직후의 학기로 한다. 단, 수업료 체납으로 인한 휴

학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즉시 복학이 가능하다.

- ④ 휴학 기간 내에는 학교의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자퇴, 재입학)

- 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퇴하려는 자(타교 전학을 포함한다)는 자퇴계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에 출원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의 무단 결석을 한 자는 자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③ 본교에서 자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학교에 미리 알리고, 모든 미납금을 완납해야 하며, 도서 등을 반납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학금을 새로이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의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 ① 본교의 7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유치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초등과정까지)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7세 수료식 및 졸업식은 매 학년도 2월 중, 해당 학년도에 졸업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장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기타의 비용징수, 장학금, 환불규정

제24조(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 운영지원비, 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목회자 자녀, 교직원 자녀, 다자녀 가구 등 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장학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26조(환불규정)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27조(교장 임무) 교장은 학교를 총괄하고 운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운영한다.

제28조(교원의 임용 기준 및 면직)

- ① 교사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발한다.
- ② 학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교사는 학생들을 본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자로서 영성 생활,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 ④ 교사의 면직은 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복무규정에 부합된 행동이 있을 시 면직하는 것으로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직자를 임명한다.

제8장 학생 포상 및 훈육

제29조(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훈육)

- ①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의 목적상 필요시 학생선도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여 학생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훈육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거쳐야 한다.
 1. 면담
 2. 반성문
 3. 가정 학습
 4.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은 제 1항에 의한 훈육을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성경적 훈육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자세한 학생선도규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퇴학)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 목적에 반하여 학칙을 무시하고 학교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사회의 결의 후 제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거쳐야 한다.

제9장 학교 운영

제32조(학교재정운영 공개)

- ① 학교의 재정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은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학교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실시한다.

제10장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제 33조(이사의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아름다운꿈의교회 당회원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이사장은 아름다운꿈의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교장 포함, 교사들의 임용 및 재정 감사 임무를 한다.

제34조(위원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조에 따라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90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
- ② 방과 후 교육활동
- ③ 학교급식
-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장 보칙

제36조(학칙 개정)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개정된 안은 교육감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한다.

- ② 제1항의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따라 제안되며,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1장 부모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부모의 권리와 책임)

- ① 신명기 6:6~9 말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깊이 동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
- ② 개인, 가정의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 ③ 자녀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 삶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본을 보인다.
- ④ 오하비 리더십 학교는 학부모와 함께 자라가는 학교로서 학부모와 학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참석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가 학부모의 재정적 의무를 기반으로 운영됨을 인지하고, 재정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 ⑥ 정기, 비정기적인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학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학교의 성장을 위해 학교에 바람직한 제안을 하며, 올바른 경로를 따라 의사소통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체벌 및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 본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비(수업료,입학금,운영지원비,기타비용징수,체납자조치,장학금)

제3조(교육비납입)

- ① 교육비는 매달 수업료, 운영지원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 ② 교육비는 월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납부(학기단위)도 가능하다.

제4조(수업료)

- ① 7세 수업료는 매달 30만원으로 한다.
- ② 1-6학년 수업료는 매달 4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입학금)

- ① 입학금은 50만원이며, 1회 내는 것이 원칙이다. 전학, 퇴학, 휴학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 ② 7세 과정 수료 후 오하비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6조(운영지원비)

- ① 초등 1학년 과정부터는 운영지원비를 납입한다.
- ② 운영지원비는 매달 20만원으로 한다.

제7조(기타비용징수)

- ① 그 외 체험학습비, 교재비, 교복비, 스쿨버스비 등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체납자조치)

- ① 학교장은 교육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거나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체납이 3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가정 학습을, 체납이 6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졸업 및 수료시 미납된 교육비가 있는 학생은 체납확인 및 납입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완료로 약속해야 한다.

제9조(장학금)

-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그 외 목회자 및 교직원 자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복수 적용일 경우 금액이 큰 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② 현재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의 자녀는 입학금을 면제하며,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5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 ③ 전임 사역자(부) 자녀는 수업료 5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 ④ 교직원 자녀는 수업료 3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단, 교직원은 담임을 맡고 있는 전임 교직원에 한한다.
- ⑤ 한 가정 다자녀 재학시 둘째 자녀는 수업료의 20%, 셋째 자녀는 수업료의 30%, 넷째 자녀는 수업료의 4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 ⑥ 특별 장학금의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추천한 대상자를 학교장의 권한으로 심의한다.
- ⑦ 제9조 제 2,3,4항의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이 연간 수업일수 중 1/3 이상 결석에 해당하면 장학 자격을 박탈한다.

제3장 출결 관리 규정

제10조(출석 및 지각)

- ①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따른 정해진 시간까지 등교 또는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모든 준비를 하며, 일과 중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결과,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일과 중 이라 함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로 한다.)
- ②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지각에는 인정지각, 질병지각, 미인정지각, 기타지각이 있다.

제11조(결석)

- ① 학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결석에는 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있다.
- ②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4. 교외체험학습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사망	부모, 형제, 자매	5
	조부모, 외조부모	3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③ 질병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결석계]와 함께 반드시 진단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조퇴,결과 포함)에는 질병결석(지각,조퇴,결석)으로 하며, 월 1일의 범위 내로 가능하다. 이 경우 담임교사 의견, 학부모 의견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⑤ 미인정 결석은 무단으로 사유없이 결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1. [결석계] 미제출
 - 2. 가정학습 기간
 - 3.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⑥ 기타 결석은 가족 간병, 공납금 미납, 기타 합당한 사유 등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 ⑦ 예정된 결석은 최소 5일 이전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담임교사가 판단하여 이유가 불충분할 경우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수업 및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외 체험학습은 한 해 14일로 제한한다. 단, 경우에 따라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⑨ 교외 체험학습으로 일정 기간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5일 이전에 현장학습신청서를 통해 학교에 알려야 하며, 이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서류 미제출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 ⑩ 예기치 않은 결석 이후 등교일에는 [결석계]를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⑪ 3일 이상의 무단 결석은 자퇴 의사의 표시이며, 자퇴 숙려기간으로 간주된다.
- ⑫ 연속된 결석허용일수는 최대 3일이며, 3일이 초과될 경우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선교활동 및 교회활동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 있다.
- ⑬ 결석 기간 진행되는 시험과 테스트에는 해당 과목 교사의 요청 시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0점 처리한다. 시험일정은 담임교사 및 해당 교사 면담으로 논의 및 조정한다.

제12조(조퇴)

- ①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조퇴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② 학생들은 질병 등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퇴를 할 수 있다. 단 담임교사 면담, 학부모 전화를 통하여 진행되며, 부적절한 조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퇴는 불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미인정 조퇴로 간주한다.
- ③ 담임교사를 통해 수령한 [조퇴증]을 작성하며, 다음 등교일에 부모의 확인을 받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결과로 처리된다.
- ④ 한 학기에 조퇴가 5회 반복될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3조(결과)

- ①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② 정규 수업이 시작된 이후 등교를 하여 같은 날짜에 지각과 결과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③ 같은 날짜에 조퇴와 결과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④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⑤ 1교시 종료 시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미인정 결과로 처리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전달되면 등교로 인정될 수 있다.

제14조(개근)

- ① 개근이란 한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인정결석(지각,조퇴,결과) 사항 중 1,2,3,5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출석으로 인정을 받아 개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1조 2항 참조)
- ② 학교생활기록부상에는 1년 단위로 개근이 입력된다.

제4장 평가

제15조(평가의 목적과 활용)

- ①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식과 분별, 능력, 책임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 ② 평가는 '변별'을 위한 평가가 아닌 '성장'을 위한 평가를 지향한다. 이는 '교수자'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이며, '지식 중심'이 아닌 '반응 중심'이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제16조(평가기준)

- ① 모든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 ② 객관적 지표와 평가산출을 위한 자료를 위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역사과목 평가는 성적 기록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단, 초등 1~4학년의 평가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
- ③ 성적은 100점 만점을 태도(40점), 과제(30점), 시험(30점)으로 배분하여 기록한다.
- ④ 각 항목의 비중에 따른 점수 합산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함께 기록하며, 점수별 등급기준 은 아래와 같다.

점수	96	94	90	86	83	80	76	73	70	67	64	60	0
등급	A+	A	A-	B+	B	B-	C+	C	C-	D+	D	D-	F

- ⑤ 성경, 세계관 및 예체능교과의 평가는 등급산출이 아닌 각 과목별 별도 평가지침에 따른다.
- ⑥ 생활통지표에는 서술 형식의 피드백을 기록한다. 성취, 능력, 행동, 태도, 성품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익한 교사의견을 제공한다.

제17조(태도)

- ① 태도 점수는 수업이 있을 때마다 기록한다.
- ②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태도 점수를 감점하여 기록하며, 항목당 10점씩 감점한다.
 - 1. 계속해서 떠드는 행동
 - 2. 잠
 - 3. 허락없이 이동
 - 4. 친구를 놀리거나 무례하게 대함
 - 5. 수업 준비 미흡(준비물, 지각)
 - 6. 교사에 대한 불손함, 지시 불이행
 - 7. 경청하지 않는 자세
 - 8. 음식물 섭취
 - 9. 타 과목 공부(숙제)를 함
 - 10. 수업 중 필요 이상의 화장실 사용
 - 11. 다시 부여된 시험기회에서 이전 점수 대비 상향을 보이지 않을 때
 - 12. 기타 선생님의 수업권리와 학우들의 학습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행동

제18조(과제)

- ① 과제 점수는 과제 수행시마다 기록한다.
- ② 불이행 0점, 이행은 100점이나 미비할 시 완성도에 따라 교사의 판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 ③ 수행평가(프로젝트 과제)도 과제에 해당하며, 시행시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시험)

- ① 시험 시행시마다 점수를 기록한다.
- ② 한 번의 시험에서 첫 번째 점수를 기록하되 학생은 80점 이상을 받을 때까지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
- ③ 한두 번의 시험을 근거로만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 시험은 학기 중 3~5회로 시행한다. 단, 쪽지시험, 퀴즈 형태는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생활 및 운영 수칙

제20조(생활예절)

-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키고, 고성, 욕설, 비어, 은어 등 타인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가 누구이건 인사하며, 기본 예절을 습관화한다.
- ③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 부모님, 선생님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제21조(복장 및 두발)

- ① 학교 일과 중에는 <표1>과 같이 교복을 착용한다.
- ② 교복 착용 시기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 계절변화 및 개인 체온 상태에 따라 시기 조정 및 혼용을 할 수 있다.
- ③ 등하교 시에는 기온에 따라 교복 위에 단정한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 ④ 반바지의 경우 무릎 위 선 10cm보다 길게 착용하며, 작아졌을 경우 재구매하여 입는다.
- ⑤ 두발의 경우 검정색, 갈색 외의 염색을 금지한다.

<표1>

초등	동계	하계(생활복)	동계 체육복	하계 체육복
시기	동계 : 2월, 10월~12월 / 하계 : 5월~7월 / 혼용기간 : 3월,4월,9월			
상의	OHABI 남색 맨투맨+점퍼	남색 반팔 카라티	동복 상의와 동일	생활복 상의와 동일
하의	자유복 (남색, 검정색의 단정한 바지)	남색 반바지	자유복 (남색, 검정색의 단정한 바지)	생활복 하의와 동일

제22조(화장 및 액세서리)

- ① 스킨, 로션, 무색선크림, 무색립밤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눈 화장, 속눈썹, 볼 터치 및 모든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 ③ 매니큐어는 금지한다.
- ④ 귀걸이 착용은 금지한다.
- ⑤ 반지, 목걸이는 착용할 수 있으나 너무 크거나 화려한 것은 착용할 수 없다.

제23조(미디어규정)

- ① 오하비 리더십 학교의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키즈폰만 허용한다.
- ② 가정의 결정으로 피쳐폰(혹은 공신폰)을 안전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학생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해당 휴대폰은 인터넷, 게임 등의 기능이 제한된 모델인지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시 반환 받아 학교 밖에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생은 개인용 미디어 기기(이어폰, mp3, 스마트워치 등)를 등교시 담임 선생님에게 보관하고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수업의 필요에 의해 지참한 개인용 미디어 기기는 해당 교과목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에서 제공하는 IT기기는 지정된 수업에서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⑤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 미디어규칙을 세우고,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⑥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2시간 이내로 사용한다.
- ⑦ 온라인 게임, SNS, 웹툰, 웹소설, 채팅, 개인방송채널은 이용할 수 없다.
- ⑧ 위의 미디어 규정을 어길 시 학교 선도규정에 의해 훈육할 수 있다.

제24조(시설물 이용 및 환경보전)

- ① 다른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 ②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소중히 다루고, 낙서하거나 훼손, 파손해서는 안 된다.
- ③ 교실과 책상 및 사물함을 깨끗이 관리하며 본인이 활동한 구역에 대한 청소, 정리 정돈은 습관화한다.
- ④ 지정된 도우미 학생은 비품 관리, 청소, 정리정돈 등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 ⑤ 학생에 의한 학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 학교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5조(사교육)

- 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사교육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EBS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외한 동영상 강의, 전화강의, 화상강의는 허용되지 않으나, 교사의 지도하에 수강할 수 있다.
- ③ 예체능 교과(음악,미술,체육) 및 외국어(영어 제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교에 알리되 사교육 여부는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성 안전 규정)

- ① 이성교제는 금지한다.
- ② 이성교제를 조정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 ③ 남,녀 학생은 폐쇄되거나 친구들과 동떨어진 공간에 1:1로 머물지 않는다.
- ④ 이성 학생끼리 손, 팔을 잡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안아 주는 등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예배시간, 기도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 ⑥ 성별의 차이를 근거로 타인이나 타집단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 ⑦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 ⑧ 타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공동체 구성원은 부적절하고 불쾌한 접촉이나 말에 단호히 거부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7조(그 외 안전 및 존중을 위한 규정)

- ① 위험물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
- ② 학대(타인 혹은 동물 등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일)하지 않는다.
- ③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헤드록, 목 조르기, 세계 밀치는 행동, 머리 잡아당김 등의 행동 포함).
- ④ 착취(타인의 성과를 무상 혹은 현저하게 적은 보상으로 취득하는 일)하지 않는다. 위협, 폭언, 협박을 하지 않는다.
- ⑤ 동의 없는 촬영(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⑥ 스토킹(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⑦ 위험물(칼, 총, 담배, 성냥, 라이터, 폭죽, 화학물질, 모형 칼, 모형 총, 음란물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위험물을 소지한 것이 명백할 경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차별/혐오(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신념의 차이를 근거로 타인이나 타집단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를 하지 않는다.
- ⑨ 배제/따돌림(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⑩ 외모를 폄평하거나 비하 또는 모욕하지 않는다(온라인 포함).
- ⑪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⑫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 사진, 영상, 저작물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 ⑬ 타인 혹은 학교를 포함한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타인과 학교에 대한 비난을 공개된 SNS에 올리는 일 포함).
- ⑭ 타인에게 권리가 있는 작품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⑮ 절도하지 않는다.

제6장 학생선도규정

제28조(학생선도규정)

- ① 오하비 리더십 학교의 포상과 징계는 학생 선도 규정에 근거한다.

- ② 오하비 리더십 학교의 규율은 회복적 생활 교육에 근거하여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행동 수정 및 변화를 촉구하고자 함이며,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9조(포상)

- ① 학교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각 항목은 <표2>과 같다.
- ② 포상은 항목마다 학생들에게 달러를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며, 달러는 학기 말에 물품,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받는다.
- ③ 학교 포상의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대, 축소될 수 있다.

<표2>

포상 항목	항 번	내용	\$
하나님을 경외하고	1	매일 QT (월-토 빠짐없이 / 1주 마다)	5
	2	매일 플래너 작성 (월-토 빠짐없이 / 1주 마다)	5
	3	설교 노트 작성시 (1회마다)	1
	4	말씀암송 우수할 때(하가 수업시)	1~3
이웃을 사랑하고	5	자기 역할 이외의 봉사를 하였을 때	2
	6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2
	7	예절에 있어 모범이 되고 칭찬할만한 때	1
나를 가꾸자	8	수업에서 적극적, 우수한 태도가 인정될 때	2
	9	과제 이행이 우수할 때	2
	10	독서 & 독서일지작성(학년별 차등)	1~3

제30조(훈계)

- ① 오하비 리더십 학교의 규율은 회복적 생활 교육에 근거하여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3차 경고
 2. 2단계 : Detention 1회
 3. 3단계 : Detention 2회 & 반성문 & 부모님 대면상담
 4. 4단계 : Detention 3회 & 반성문 & 학생과 부모, 교사 대면 면담
 5. 5단계 : 가정학습
 6. 6단계 : 가정학습 2차
 7. 7단계 : 퇴학조치
- ②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행동 수정 및 변화를 촉구하고자 함이며,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③ 훈계 항목은 <표3>와 같다.
- ④ 학생 훈계는 사안 발생 후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며, 모든 항목에 대해 응보적 태도가 아닌 권면과 경고로 시작한다.
- ⑤ 1-4학년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가정의 협력으로 생활교육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⑥ 각 항목의 횟수가 채워지면 Detention(방과 후 면담시간)을 갖는다.
- ⑦ 매 단계마다 교사는 학생과 상담 및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면담횟수가 3회 이상이 될 때부터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단계가 된다.
- ⑧ 모든 면담 및 반성문 작성시에는 다음의 단계를 반드시 포함한다.
 1. 인식 : 내가 입힌 피해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
 2. 공감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상황 이해하기
 3. 인정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기
 4. 참여 :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
 5. 회복 :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 ⑨ 5학년 이후,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면담 차수는 누적된다. (매 학년을 마칠 때마다 학생의 단계가 기록된다.)
- ⑩ 가정학습 기간은 7일로 하며,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가정학습 동안의 학교 시험 및 과제는 모두 0점이 된다.
- ⑪ 2번의 가정학습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은 퇴학 조치를 받게 된다.

<표3>

훈육 항목	항번	내용	횟수
출결	1	무단 지각, 조퇴, 결과	3회
생활예절 및 용모	2	언행(욕설, 비속어, 거짓말 등)	5회
	3	인사 등 기본 예절 부족	
	4	용모, 두발 및 복장 불량	
환경보전	5	학교의 공공기물 훼손 또는 파손	3회
	6	당번, 청소 및 환경 미화 불성실	
미디어 사용	7	교육활동 외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	
	8	교내에서 게임, SNS 이용	
학생의 책임과 의무	9	이성교제	1회
	10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기타	11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불순종, 기만	2회
	12	교우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행위	
	1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 및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